



百戰百勝

CONTENTS



백재백승

제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 지원

04

+

CHAPTER 1

재창업 지원

26

+

CHAPTER 2

개인 신용회복 지원

경영위기 지원

40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52

+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70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 지원

+

CHAPTER 1

재창업 지원

+

CHAPTER 2

개인 신용회복
지원

百戰百勝



재창업 지원

종합지원 

0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신청대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

지원내용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 상담 및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지원
 • 필요시 전문상담은 서울센터와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전화(02.6678.4050) 상담
 - 센터방문 상담



지역	주소지
서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 유통센터 12층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에이동 1층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대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광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지역본부
대전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경남지역본부

⊕ 기관소개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 상담센터

주요 업무 경영위기 기업 및 재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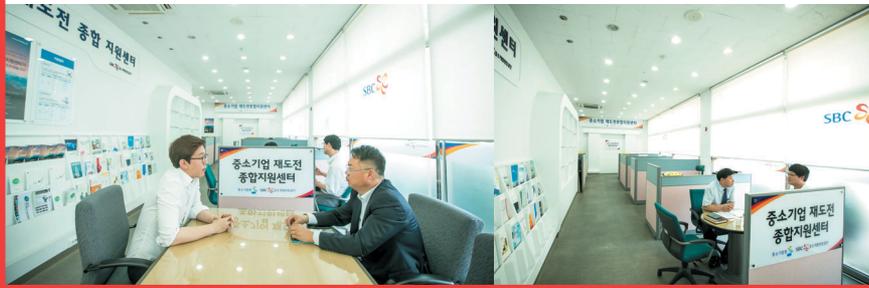
심층상담

» 경영위기 기업

- 세무·회계 및 노무상담, 상사 및 법률분쟁, 기업 M&A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 등 (필요시 진로제시컨설팅 연계지원)
-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회생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 재도전기업인

-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절차 상담
-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금융



02

재창업 자금(일반)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융자 지원

- ☎ **문의처** (신용회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4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신청대상

신용회복자 | 예비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 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예비)재창업자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②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

지원내용

신용회복자 지원 | 재창업자금 시설·운전자금 융자

-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이내

신용미회복자 지원 |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 채무조정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이자채권은 전액감면,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5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 후 채무액은 최장 3~5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 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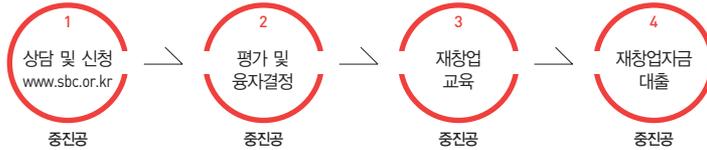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신청

- » 신용회복자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부를 통해 신청
- »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신청절차

신용회복자 | 재창업자금 용자 절차



신용미회복자 |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용자 절차



꼭 알아주세요!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별도 지정 교육 이수시 대출

재창업 지원

금융



03

재창업 자금 (용자상환형)

도전적인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용자해 주고, 성실실패 시 용자상환금 일부를 감면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4

신청대상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 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예비)재창업자

※ 위 요건과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

지원내용

시설·운전자금 용자지원

- ▶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4년 포함), 운전 6년(거치3년 포함)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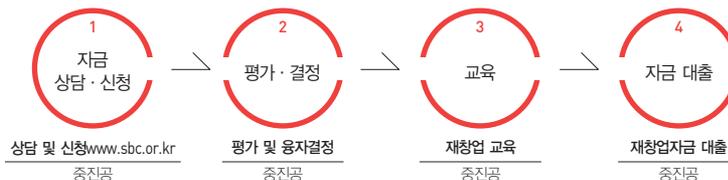
신청기간

신용 회복자·미회복자 | 연중 수시

신청방법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 금융

04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무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을 지원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부 053.430.4416

신청대상 신보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 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 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등

지원내용 **회생보증 지원** | 신보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보증지원

- 지원금액 : 채무상환(예정)금액 이내
-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등 우대

신규보증 지원 |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추가로 지원

- 지원금액 :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조사수수료(면제) 등 우대

상당방법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T. 1588.6565)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재창업 지원

금융



05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자금과 재기자금의 신규보증을 일괄하여 지원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051.606.7483

신청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개인, 법인, 실제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기보증 신청대상 제외 대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구상채권 변제를 위한 회생지원보증과 사업재기자금 용도의 신규보증을 일괄하여 지원
- 대위변제 발생책임이 있는 기업주인 점을 감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T. 1544.1150)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금융

06

지역신용보증재단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도모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042.480.4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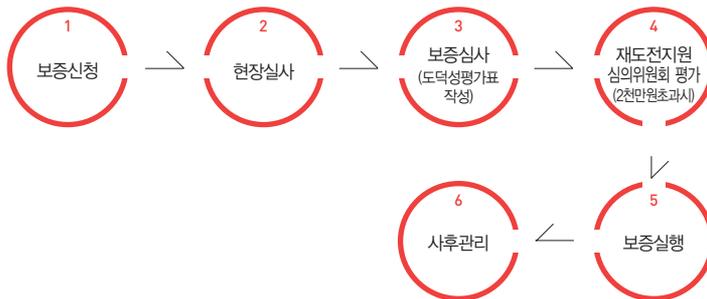
신청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기업이거나,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 중인 기업
으로 '재도전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 » 대위변제기업이 개인기업 :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 » 대위변제기업이 법인기업 :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 기업당 보증금액 2천만원이하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지원내용 기업당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전액보증(100%), 보증료(1.0% 고정)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T. 1588.7365)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재창업 지원

금융



07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발급 지원

 문의처 서울보증보험(주) 02.3671.7063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32

신청대상

재창업자금 대출기업

대출일로부터 2년 내 보증지원 신청 기업

➢ 다음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대상 제외

- 재창업자금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 기업, 재창업자금 사고자, 서울보증보험(주) 보험 사고자

지원내용

➢ 2년간 기업 당 5억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용 지원

➢ 이행보증보험(입찰, 계약, 차액, 선금금, 하자, 지급) 및 인허가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은 '정부보조금' 만 지원하고, 하자보증보험중 '주택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지점 통해(T. 1670.7000) 신청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 리스 지원

재기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리스 지원

 **문의처** (법인신용카드) IBK기업은행 1566.2566
(자동차리스) KDB캐피탈 02.6330.0114

신청대상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으로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고,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 중인 자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내용

법인신용카드 |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하며 신용한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

- 일시불·할부 등 신용한도가 제공되며 카드로는 이용불가

자동차리스 | KDB캐피탈에서 지원하며 최대 국내산 차량 2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이며, 기한연장 등이 불가

신청절차

법인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법인 신용카드 발급 상담과 신청

자동차리스 | KDB캐피탈 전담창구에서 자동차 리스 상담과 신청

재창업 지원

금융



09

재창업지원펀드

정부·민간출자로 조성된 재창업지원펀드를 우수한 재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기를 지원하면서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투자대상

폐업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요주주(지분 30% 이상)가 재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는 기업

신청방법

재창업지원펀드 민간 운영사 소개

큐브벤처 파트너스 www.cubevp.com

운영사 소개 | 2009년 설립된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로 10년 이상 벤처투자업무를
해 오던 파트너들이 재창업기업인들의 성공 지원

투자대상 | 실패기업 대표이사·임원·주요주주(30%이상)가 재창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IT, 바이오, 소재 등 유망 분야 중소기업

투자절차 | 사업·기술성 등 심사절차를 거쳐 투자여부 결정

투자상담 | T. 02.2038.2577, cubevp@cubevp.com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운영사 소개 | 창업초기 기업 및 ICT,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초기업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까지 지원

투자대상 | 주요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폐업을 겪었으나 신규로 재창업하여 핵심기술
및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재도전 기업

투자상담 | T. 02.575.4493, 1281(황태철 대표, 안광수 팀장)

⊕ 사업화

10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일괄 지원

☎ 문의처 (일반분야)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480.4434
(ICT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55

신청대상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 예비 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자 또는 기업
- ②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③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중 3년(폐업기업의 창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이상 기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④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

신청기간 매년 초

지원규모 150개 사 내외 일반분야 100개, ICT분야 50개 내외

재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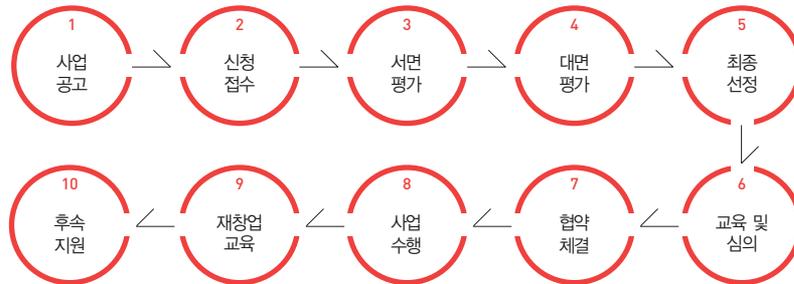
지원내용

-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 지원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
- 재창업성공캠프 내 전용 입주 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 전문가 상시 멘토링 등 제공 (평가후, 선별지원)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신청

사업절차



꼭 알아주세요! 2016년도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R-Camp 밀착 지원을 위한 전용 보육공간으로 입주공간,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사업실패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R&D사업 참여가 힘든 재창업자에게 R&D자금을 지원하여 실패기업인의 기술·경영 노하우 시장 방지

문의처 중소기업R&D클러스터 (국번없이)1357 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신청대상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기업

- ▶ 사업실패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 단, 1, 2, 3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이 가능

주요 기본 자격요건

-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③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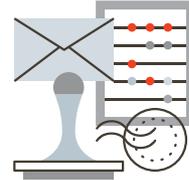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

지원내용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고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 50% 이상)	자유 응모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재창업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온라인(SMTECH)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신청절차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 (구비서류) 등록

사업절차



꼭 알아두세요! **!** 다양한 재창업 기업인에 기회확대를 위해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분야

ICT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042.612.8677

신청대상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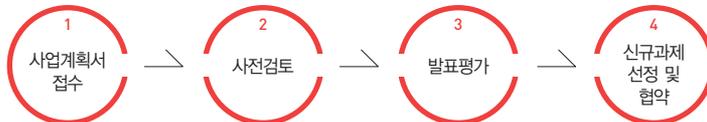
- ▶ 재도전기업인 기준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1년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 재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
 -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지원절차



재창업 지원

교육



13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사업실패로 실의와 좌절에 빠진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철저한 실패원인 분석, 자기 반성 및 성찰, 재도전의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과정

문의처 중소기업재기개발원 051.316.4050

신청대상

중소기업 경영에 실패 하신 분 또는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위기극복이 필요한 사업자

-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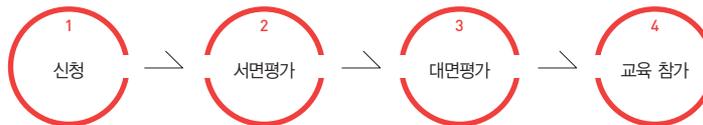
교육과정

- **교육기간** : 4주간 무료 합숙(3월, 5월, 9월, 11월 실시 예정)
- **교육장소**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경남 통영 죽도 소재)
- **교육비용** : 전액무료
- **교육내용**
 - 1인 텐트 생활을 통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을 통한 내적 치유
 - 통영의 수려한 자연을 통한 에코 힐링(eco-healing)
 - 한계극복 체험을 통한 자신감 회복
 - 바람직한 기업이 정신 회복
 - 재 창업 성공을 위한 사례학습 및 전문가 1:1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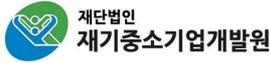
다양한 체험활동



선발절차



⊕ 기관소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올바른 재도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실현을 위해 설립

**주요
업무**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기관으로 실패기업인의 올바른 재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실현을 위해 올바른 기업가정신 전파, 재기교육, 재도전 프로세스 구축, 재도전 컨설팅 등을 수행



**재도전
교육**

- 재도전 힐링캠프 운영
- 재도전 Remind 교육 운영
- 단계별 재도전 교육 실시



**재도전
지원**

- 재도전관계기관 연계지원
- 서울재도전지원센터
- 재도전 애로지원시스템 운영지원



**컨설팅
교류**

- 재도전 온/오프 컨설팅
- 재도전기업인 모임운영
- 재도전 성과공유회 실시

**주요
성과**

- 재도전 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 운영:22차수 총 364명 수료
- 수료생 중 160여명 재창업 및 200명 이상 고용 창출
- 재도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매년 1회(총 4회 실시)
- 재도전 성과 공유회 개최:매년 1회~2회 실시(총 6회 실시)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도전 행사에서 캠프 출신 재도전 기업 우수 사례로 포상 및 수상(30여건)

교육신청 및 상담 051.316.4050, <http://www.jaegi.org>

재창업 지원



14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ICT 분야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기업인, 벤처CEO, 청년인재 등 아이디어 교류 및 재도전 네트워킹의 장 마련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5573

신청대상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CEO, ICT분야 종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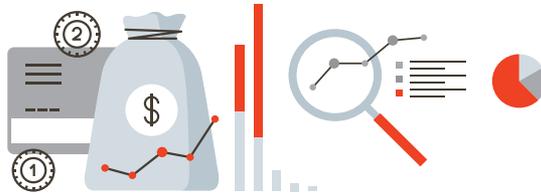
- 캠프 개요**
- 캠프구성 : 만남 · 소통 · 협력 · 경진
 - > 제1기 : 캠프 3회, 경진대회 1회(4월~7월)
 - > 제2기 : 캠프 3회, 경진대회 1회(8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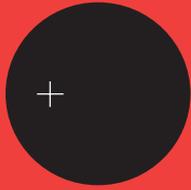


- 재도전창업 퍼실리테이터 중심 캠프 소모임 지원
-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홈페이지 상담코너)

신청접수 K-Global Re-Startup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globalrestartup.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내 해당 행사안내 참조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 지원

+

CHAPTER 1

재창업 지원

+

CHAPTER 2

개인 신용회복
지원

百戰百勝



개인 신용회복 지원

안내 

01

개인 신용회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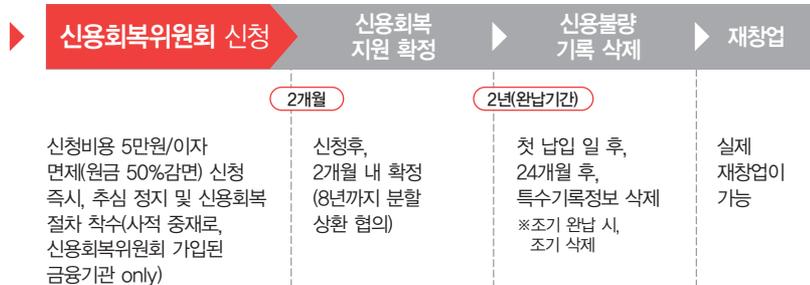
개인 신용회복 프로세스

Risk
Risk 인식 후,
1년 정도 소요
(외부 도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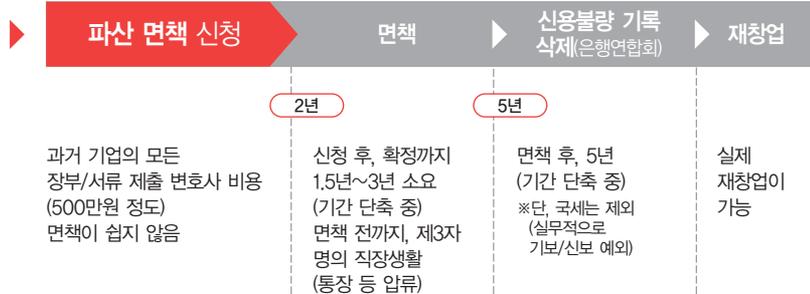
폐업 시작
3개월~2년까지 소요
(채무, 임금, 소송 등)

폐업 완료
신용불량 ▶ 제3자 명의
직장생활(통장 등 압류)
폐업 후, 파산면책
신청까지 수년 소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도전 Process



파산면책을 통한 재도전 Process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인은**

- ▶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본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맞게 조절하여 채무를 상환
- ▶ **과다 채무** |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
- ▶ **과다채무로 상환불가** | 채무과다로 향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인은 법원의 개인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보유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한 후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 면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vs
법원 개인 파산·면책**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
- ▶ **법원 개인 파산·면책** | 채무자 현재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채무를 탕감함

**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상담**

- ▶ **맞춤형 재도전 지원**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영위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가 심층 상담, 정책자금 융자 연계 지원
 - 신청·상담 T. 02.6678.4050 (www.rechallenge.or.kr)
-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 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30억 이하의 채무를 보유 한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 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
 - 신청·상담 T. 1600.5500 (www.ccrs.or.kr)
- ▶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 신청·상담 T. 02.3420.503 (www.kamco.or.kr)
- ▶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 | 법률구조공단 지원센터
 - 개인 회생·파산 대상자에게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
 -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이하 채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신청·상담 T. 국번없이 132 (resu.klac.or.kr)

개인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02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사업실패로 금융기관에 30억원 미만의 채무가 있는 기업인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대상

사업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 이하 채무를 보유한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 채무
※ 회원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50% 감면
• (2016.3 시행 예정) 재창업지원자에 대한 상각채권 감면을 확대 적용(정책금융기관 최대 75%,
민간금융기관 50%)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시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상환
유예 가능
상환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액 2억 이하 최장 8년, 2억원 초과는 최장 10년 이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신청
T. 1600.5500, www.ccrs.or.kr

꼭 알아주세요! 신용회복지원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경우, 불리한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 참고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금융기관에 15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 채무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

지원내용 | 담보 채무자

- 채무감면 | 연체이자만 감면 후 이자율 약정이자의 50% 수준으로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납입(단, 최저이자율 연 5%)
- 상환기간연장 | 최장 20년

무담보 채무자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30%~60%(사회 소외계층 최대 70%)까지 감면
- 상환유예 | 최장 2년, 유예이자 2%
-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신청

T. 1600-5500, www.ccrs.or.kr

개인 신용회복 지원

기관소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가계안정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주요
업무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 파산을 예방

채무상당 및 조정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재창업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 신용회복지원 및 재창업 자금을 지원

상담 및 접수



⊕ 채무조정

03

개인 회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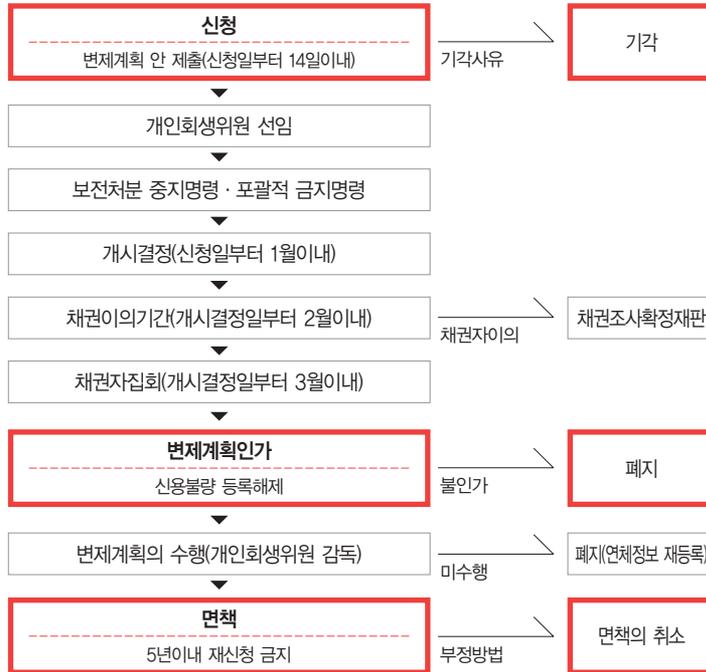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무를 일정기간(3~5년)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제도

- 신청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 채무(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채무자
- 신청비용** 신청서 인지대(3만원), 금지명령 신청인지대(2천원),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소요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 소요기간** 평균 9개월 소요
- 개인회생 효력**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 신청방법** 채무자, 신청취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술서 등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개인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의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개인회생 인가 중”이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인가일로부터 5년 경과 시 “개인회생 인가 중” 공공정보는 삭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중”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신청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채무면책

04

개인 파산·면책 제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총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갚아주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 면책하는 법적 제도

신청대상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있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150%보다 소득이 적은 개인 채무자

신청비용 신청서 인지대(2천원),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이 소요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소요

개인 파산·면책 효력 보유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고, 면책 결정된 채무는 변제 책임이 소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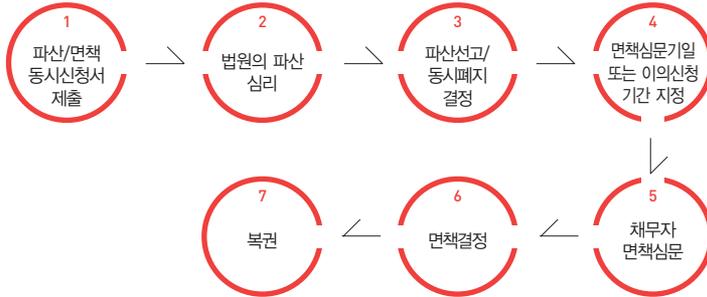
신청방법 개인 채무자는 신청서(파산·면책 동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개인 신용회복 지원



개인 파산·
면책 절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포함)이 5억원 미만이면 간이파산 가능

개인 파산·
면책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 면책결정시 기존의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면책결정자[※]”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

» 공적·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시 노출

신청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채무조정

05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책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하여 실패기업인의 채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서민금융나들목 1397

신청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 국민행복기금, 한미금융, 희망모아 포함

지원내용

	구분	신용회복지원	비고
채무 조정	주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30~50%) 적용	소득 및 재산 여부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최장10년 무이자 분할상환
	연대보증인	채무관계자수 안분 후, 채무감면율 (30~50%) 적용	
	특수채무자	특수채무자** 개인상황에 따라 60~70% 감면	

* 소득,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

** 중소기업인,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또는 전화 T. 1588.3570
서민금융나들목 통합콜센터 T. 1397

개인 신용회복 지원

참고 

참고 |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 분	개인 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 시기	2002.10.01	2010.04.26	2004.09.23	1962.01.20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좌동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 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주채무 및 보종채무 30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좌동	계속적 소득이 있는 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 영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좌동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 조정 수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50% 감면 (소외계층 60~70%) 상환기간 최장 8년 이내 최장 2년 상환유예	이자, 연체이자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 감면 상환기간 최장 8년 이내 (2억원 초과 10년) 최장 3년 상환유예 (2억원 초과 5년)	5년 이내 채무변제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원료 시 면책	좌동	변제원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 연합회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좌동	변제계획 인가 시	면책 결정 시
은행 연합회 공공 정보 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채무변제 원료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좌동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 원료시 또는 개인회생 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 지원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百戰百勝



중소기업 사업정리

안내 

01

중소기업 사업정리

사업 정리란?

정의 | 중소기업 폐업시 필요한 행정처리* 및 잔존요소**를 처리를 하는 것

- * 신고(폐업, 부가세, 법인세 등),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탈퇴 등
- ** 채무(상거래, 금융, 조세 등), 유효자산(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유형 | M&A와 같은 양도형 사업정리와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같은 해체형 사업정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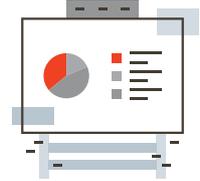
유형	제반절차	비고
양도형 사업 정리 ▼	M&A, 자산매각 등	- 영업이나 자산이 환가 가능한 가치가 있을 때 - 사업정리 초기에 시도
해체형 사업 정리 ▼	폐업신고(국세청) 청산 혹은 파산 절차 후 법인해산 등기(법원)	- 양도형 사업정리가 불가능할 때 (청산절차) 자산 > 부채 (파산절차) 자산 < 부채

사업정리 애로요인

소요기간 장기화 | 회사정리 기간의 장기화(평균 8.6개월)로 인해 재도전까지 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전문가 | 회사정리 과정에서 이용한 자문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만족도가 낮은 상태

* 회사정리과정에서 각종 지문, 파산비용 등 평균 6천만원 소요



**사업정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업정리 전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은 필수 !!!

사업정리 하기 전 세금, 노무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정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향후 재도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뿐 아니라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 이용

어렵다고 사업정리만이 최선일가요?

기업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나 구조개선을 통한 위기 극복도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이용

폐업시 행정처리

폐업 신고

면허 또는 허가증 있는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누락 시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소득세) 신고

매출액에 추계로 과세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면,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와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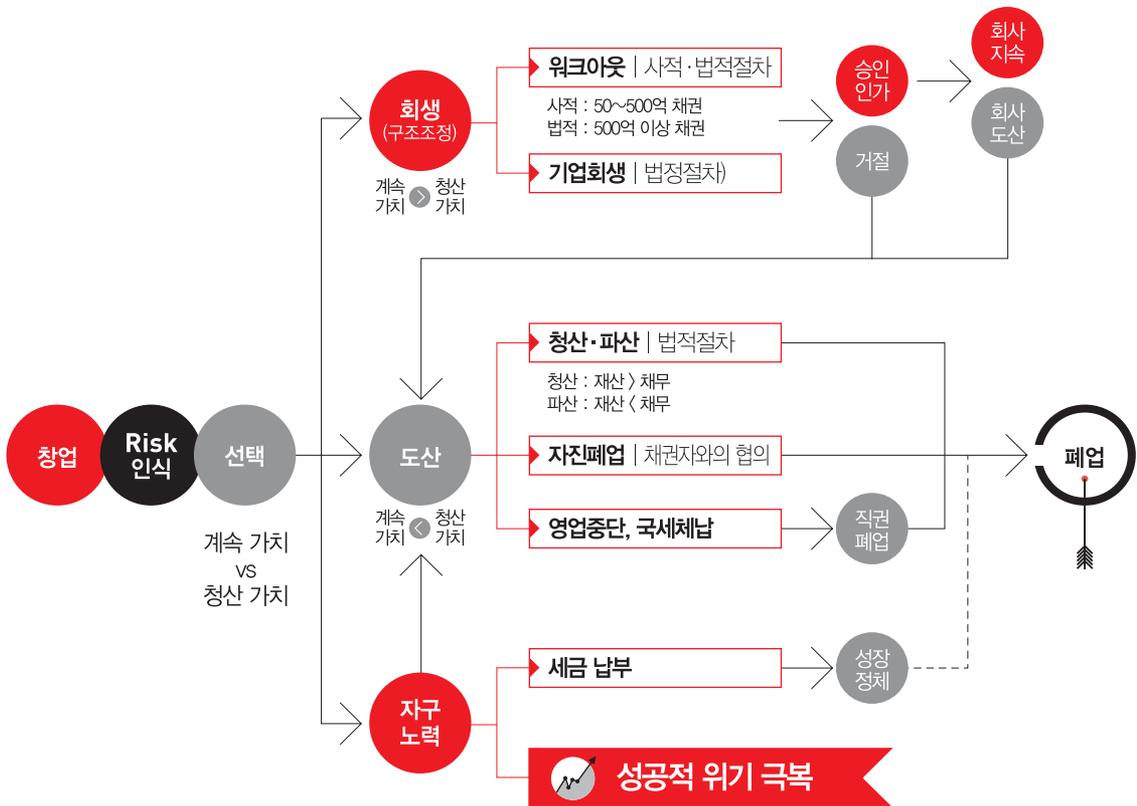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대 보험을 계속 부담하게 됨

중소기업 사업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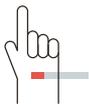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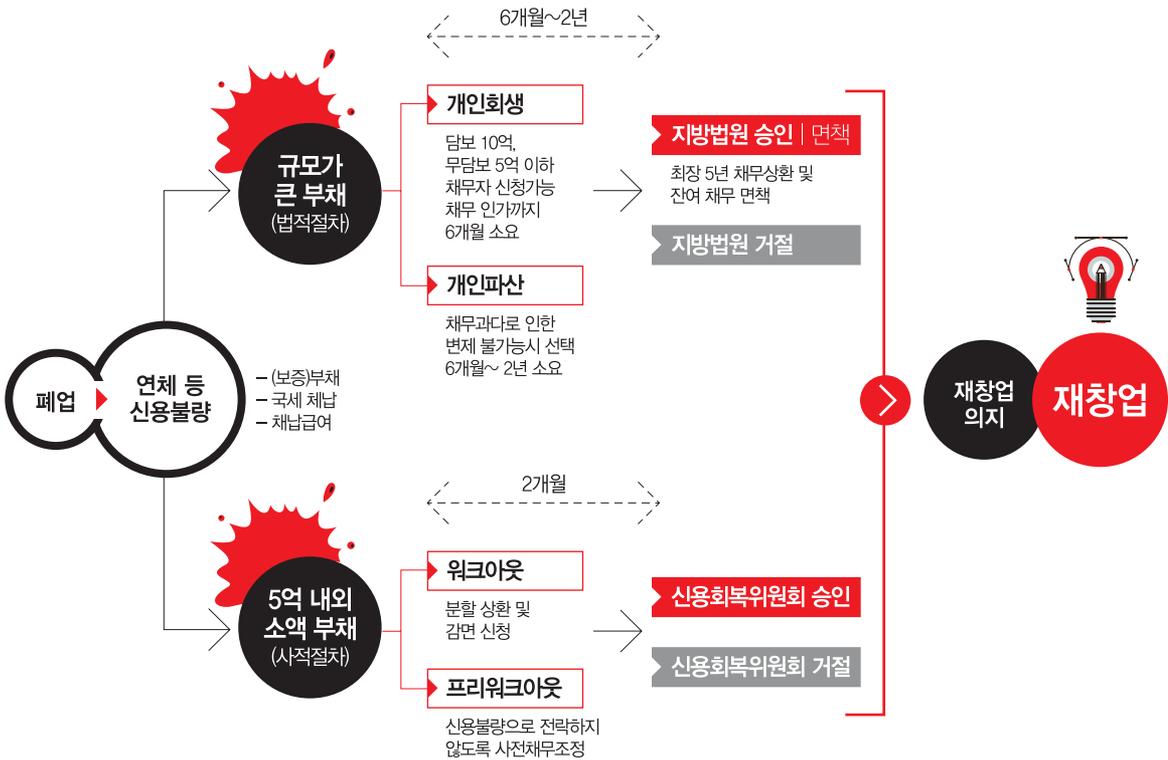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1)



• Risk : 매출급락, 시장불안, 은행독촉, 부도 경고 등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II)



-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결정 후 5년간 은행연합회 DATA관리
- 모든 면책에서 국세체납액은 제외

중소기업 사업정리

종합안내



02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신청대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

지원내용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 상담 및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지원
 • 필요시 전문상담은 서울센터와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상담
 - 전화(02.6678.4050) 상담
 - 센터방문 상담

지역	주소지	연락처
서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 유통센터 12층	02.6678.4050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에이동 1층	051.630.7426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50.0532
대구	대구 북구 유통단지 90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1.5277
광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지역본부	062.600.3021
대전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866.0153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경남지역본부	055.212.1384

+ 컨설팅

03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에 폐업·파산 등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사업정리 희망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기업

컨설팅 내용 사업정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각종신고 절차 안내 및 토지·건물 등 재고물품 처분 방법

재무·세무 컨설팅
부가세·법인세 등 행정절차 및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방법

법무, 노무 컨설팅 및 계획 제시
채무 및 신용회복 방법,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계획 제공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04

법인기업 파산 제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6678.4050

신청자격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기업의 이사 또는 청산인
 • 법인기업의 모든 이사가 아닌 일부 이사만 파산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사실을 소명해야 함

신청비용

부채총액 5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500만원 소요
 • 채무기업의 부채 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파산신청 ~ 파산선고까지 약 1개월
 파산선고 ~ 종결까지 약 1년 소요

파산 효력

- 채무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매각·배당
 - 법인은 파산·종결하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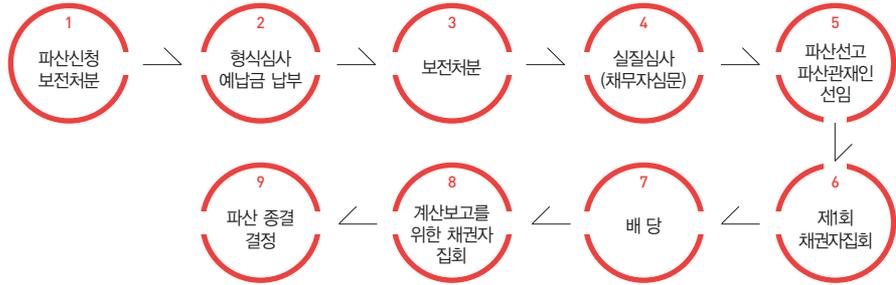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신청절차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극히 적어 조세, 임금, 파산절차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

기업
파산시
유의할
사항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함께 법인 해산으로 동일 법인으로 계속경영 불가

중소기업 사업정리

참고



참고 | 법인기업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 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업파산
	계속가치 > 청산가치	계속가치 > 청산가치	계속가치 < 청산가치
대상	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경영위기 기업 중 회생 가능성 높은 기업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대상 채무	채권은행협의회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내용	경영애로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 정상화 계획 실행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영애로 기업이 회생계획 대로 경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면책	구조조정에 실패한 회생불능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하고, 해산하여 소멸
감독주체	채권보유 금융기관(사적조정)	법원(법적조정)	법원(법적조정)
채무조정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이자감면 및 출자전환 등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	기업의 채무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 나머지는 감면 혹은 출자전환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장점	-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부족 해결 - 기업회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 정상적인 영업가능 - 강제 집행 등 무분별한 개별적 집행 중지가능	- 채권자·채무자 조세부담 경감 - 회생절차에 비해 간편
단점	-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경영권 포기 또는 간섭 - 금융기관 이외 상거래 채무 등은 조정 불가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행정청의 영업제제 및 거래단절 가능성 - 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 법인 계속경영 불가 (법인의 해산) - 법인기업 해산으로 주채무가 면제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소요기간	채무 변제시까지	회생계획기간(보통10년)	보통 1~2년

⊕ 유효설비

0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증개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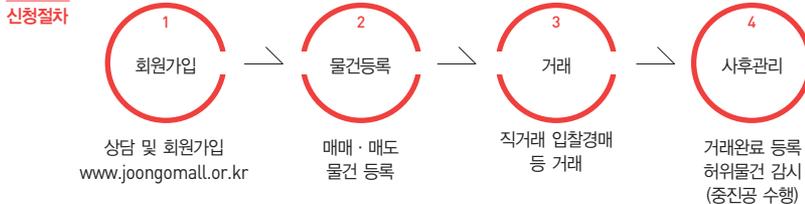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전환 및 휴·폐업 시
보유자산의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증개장터 제공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6

주요대상 사업전환·회생·재창업·휴·폐업기업 등 유류자산의 매매를 원하는 중소기업
· 유류자산 : 중고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

지원내용
- 유류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 입찰정보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 직거래, 입찰경매, 역경매를 통하여 자산거래
- 유류자산 거래정보 무료 홍보

이용기간 연중 상시



이용 중소기업자산거래증개장터 홈페이지(www.joongomall.or.kr)

+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 지원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百戰百勝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컨설팅



01

경영개선 부실예방 진단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전략수립 등 경영개선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 042.481.6844 신용보증기금 053.430.4508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513

신청대상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중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기업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지원대상

기 관	지 원 대 상
신보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의 선정요건을 만족하는 신보자체평가 K10~K14등급 중소기업
기보	조기경보시스템 상의 S3~S4 등급 기업
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 상의 예비경보기업

진단 내용

- » 기업현황, 기술 및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분석, 전략 및 로드맵, 심층분석 등이 포함된 기업진단 보고서 제공
- »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개선 전략 수립을 지원

지원내용 진단비용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참조

+ 컨설팅

02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구조개선에 필요한 전략수립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회생컨설팅 등 연계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청 042.481.6844 신용보증기금 053.430.4508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513

신청대상 주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D 등급으로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 중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

진단 내용

- ▶ 기업현황, 기술 및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분석, 전략 및 로드맵, 심층분석 등이 포함된 기업진단 보고서 제공
- ▶ 전문가가 기업의 구조개선 전략 수립을 지원
 - ※ 진단결과에 따라 자금 및 보증 또는 회생컨설팅 등 연계지원

지원내용 진단비용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방중기청에 신청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참조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컨설팅



03

기업 부실예방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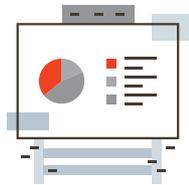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기타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제공

 문의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4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대상**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기타 경영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진단 내용**

 - » 기업현황, 기술 및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분석, 전략 및 로드맵, 심층분석 등이 포함된 기업진단 보고서 제공
 - » 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
- 지원내용** 진단비용 지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관할소재 지방중기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참조




 컨설팅

04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자금 및 기업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지원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정책자금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불리한 신용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 컨설팅 내용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 재무재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회생인가 가능성 등 심층 분석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컨설팅



05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 ›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2016년 2월 기준)

컨설팅 내용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채권목록 작성
- › 시부인표 작성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지원내용

컨설팅비용의 최대 3천만원까지(컨설팅 초과금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 채무조정

06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부채가 3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인가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6678.4050

신청자격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법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

- 간이회생 신청을 하는 때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신청비용

인지대, 예납비 등 약 500만원

소요기간

3~4개월

**기업회생
계획
인가 효력**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꼭 알아두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 간이회생 신청자는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채무조정



07

기업회생 제도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기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전환 등으로 기업회생을 돕는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6678.4050

신청대상

채무를 변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채무가 있는 기업(법인, 개인 포함)

- (참고) 채무기업이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신청비용

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2,200만원 소요

- 채무기업의 자산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8~9 개월 소요

기업 회생 계획안 인가 효력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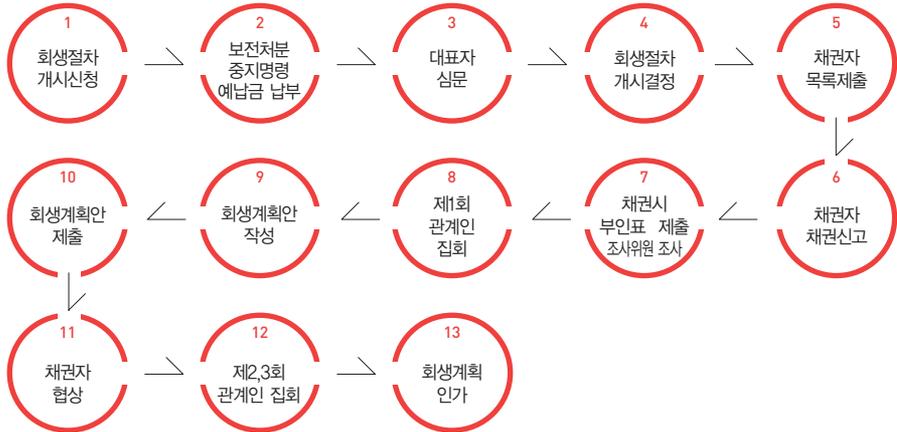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신청절차



기업회생 제도 장·단점

장점 |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사채포함)

단점 | 불리한 공공정보 등재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하고, 납품처 등과 거래관계 단절 가능성 존재

- 꼭 알아주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채무조정



08

중소기업 워크아웃

금융기관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문의처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02.3145.8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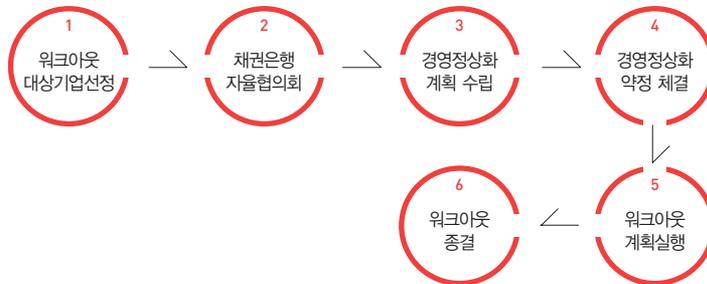
신청대상 금융기관 채무(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 이하 기업

지원내용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

* 민간은행, 증권공, 신·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

신청방법 대표자가 주채권은행 거래 영업점에 상담 후, 신청

신청절차



**장점 및
단점**

장점 | 금융기관의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없이 신속하게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 가능

단점 | 채권 금융기관의 경영권 간섭 발생,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

⊕ 재무조정

09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권은행들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253

신청대상 일시적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으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기업

- (참고) 채권은행이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으로 판정한 경우 자율협의회를 통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KIKO 통화옵션 거래 손실 반영액 청산금의 대출전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

*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운영지침 상 적용대상 은행(특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방법 대표자가 주채권은행과 협의 후, 신청

신청절차



참고사항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예정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금융 

10

사업전환 지원

현재 주력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주력업종을 유지하면서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3, 9624

신청대상

업력, 매출규모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현재 주력업종을 신규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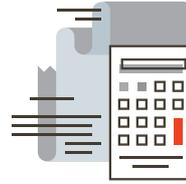
사업전환 지원 기본요건

- ▶ 업력 3년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기업
-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업종의 매출비중이 최근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크고, 매출액 기준 35% 이상일 것
- ▶ 신규업종이 '용자제외 대상업종' 이거나 숙박·음식점, 부동산업 등인 경우 제외

사업전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전환비중
완전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 전환	3년 이내 업종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3년 이내

* 전환비중 : 업종 전환(추가)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원내용

용자지원

-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용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5년 상환)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3년 상환)
- 대출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대상

컨설팅지원(기술·경영 전 분야)

지원한도 : 컨설팅비용의 50%이내(30백만원한도) 보조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일정수준 이상 전환 사업 소득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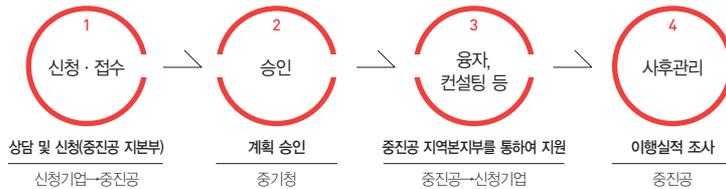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금융



11

구조개선 전용자금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조기 정상화를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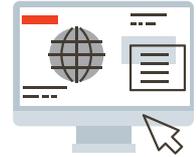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 기업 구조개선진단 대상 기업(은행권 추천)
 - 주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 기업,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 경영개선진단 기업
 - 정책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기업
-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추진 중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기업
- ▶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주요 융자제한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의 정보 등록기업
- ▶ 정책자금 융자심사 탈락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기업
- ▶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실적 기업(소상공인자금 제외)
-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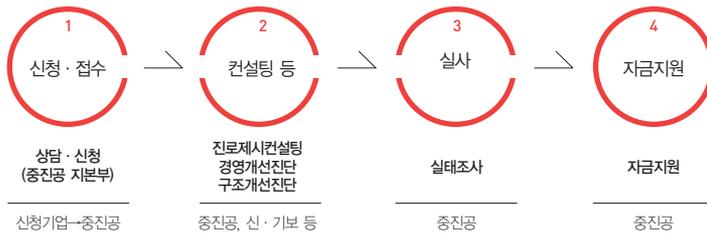


- 용자지원** **용자범위** :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한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준용(변동금리)
 - 2016.1분기 기준금리 2.52%/기업별 적용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담보부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신용 대출 3년(1년 거치 2년 상환)
- 대출 한도** : 연간 10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 기업회생인가 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30억원 이내 담보부 대출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금융 

12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은행·민간투자사가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
우수한 기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투자대상 회생, 워크아웃, Pre-workout, Fast-Track 진행 기업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민간 운영사 소개

나우아이비캐피탈 www.nauib.com

운영사 소개 : 2003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 및 성장지원투자 분야에 특화된 여신 전문금융회사

투자절차 : 1차 검토(회사소개서, 사업계획) → 공장방문 및 면담 → 2차 검토 → 기업 IR 실시 → 투자조건 협의 → 기업실사(회계법인) →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계약 체결

투자상담 : T. 02.565.6234(김정균 과장)

케이스톤파트너스 www.keystone.co.kr

운영사 소개 : 재무구조개선 또는 구조조정 지원 투자를 위한 2007년 설립된 전문 투자회사

투자대상 : 회생, 워크아웃 또는 은행관리 중인 중소·중견 기업

투자절차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투자상담 → 예비실사 → 투자조건 협의 → 정밀실사 → 투자 본계약 체결 및 투자

투자상담 : T. 02.782.9885(최윤정 과장) keystone@keystone.co.kr

에버베스트파트너스 www.everbestpartners.com

운영사 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턴어라운드를 지원코자 2012년 설립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투자대상 : 회생·워크아웃기업 및 정상기업 중 사전적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부채 비율 과다기업 등)

투자절차 : 담당자 면담(투자대상여부 파악) → 자료검토 → 공장방문 → 투자조건 협의 → 기업실사 → 투자의사결정 → 본계약 체결

투자상담 : T. 02.568.4752(이동건 상무)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 지원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百戰百勝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조세지원



0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 📞 문의처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126
(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세제문의 02.6678.4050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수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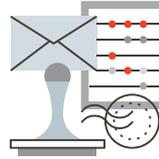
신청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지원 요건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3천만원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금액 제한 없음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출 것
 -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지원내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 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특례

신청대상 국세 징수유예 신청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 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신청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창업일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22조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5항에 의해 재기중소기업인은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

지원내용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5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신청방법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 126)에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5항 및 제6조

⊕ 신용정보

02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자에 대해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 제한 및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문의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기획팀 1544.1040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 공유제한

적용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자는 제외) 인가 등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 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기업인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 ▶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등 부정적 공공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
제한(2014.11.시행)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확정 코드 1101,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코드 1301,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확정 코드 1501
-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은행연합회가 연체 등 부정적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2016.3.시행)

신청절차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재창업자금 융자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유제한 코드 입력

꼭 알아두세요!

- 법원 파산면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를 공유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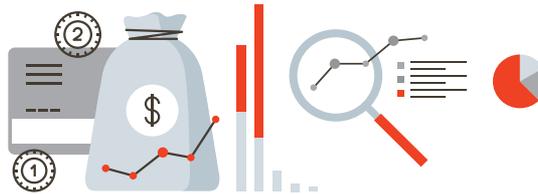
재기기업인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적용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재기기업인 중 성실히 상환하는 기업인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재창업자금 성실상환자에 대해 CB사(신용평가회사)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지원



+

 제도개선

03

정책금융기관 제도 개선

창업기업인의 실패부담 완화 및 실패기업인 신규보증 신청
가능토록 정책금융기관 제도 개선

☎ **문의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1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팀 055.751.9632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부 053.430.4416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051.606.7493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부종성(附從性) 적용

-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한해 회생추진 기업(법정관리기업) 및 파산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도 감면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개정(2012.12.11. 시행)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37조의3) 개정(2013.5.28. 시행)

정책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 ▶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자체 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까지 적용
 -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 예정(2016.7월 예정)
- ▶ **신·기보** | 보증 시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전면 면제 (2016.2월 시행)
 - 창업5년 초과기업은 자체 기업평가 10등급 중 2등급이상 전부면제, 3등급이상은 심사를 통해 선별면제

우수 재기희망기업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 감면

- ▶ 우수 재기희망기업인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민간금융기관 50%)까지 확대 (2016.3월 시행)
- ▶ 동시에 중진공, 신·기보가 신규 재창업자금을 공동 지원(2016.3월 시행)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신·기보가 대위변제기업인(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기업인)에 대해 신규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 기관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도 신규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 (2016.9월말 시행)
 - 법 시행까지 경과기간 중에는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2016.3.시행)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 정책금융 신청기회 제공

- » 세금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융자신청 가능(2015년 시행)
- » 세금분할납부계획서 제출시 신·기보 신규보증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2016.3월 시행)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TIP 

TIP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크라우드 펀딩이란?

- » 균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 2016.1. 관련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도입·시행

장점

- » 스타트업 등 대출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소외문제 해결
- » 프로젝트 진행 시 SNS 매체와 연계 가능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신제품 마케팅이 가능
- » 누구에게나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크라우드 펀딩 성공 이후 전략적 제휴 파트너 섭외 용이

주요 활용대상

- »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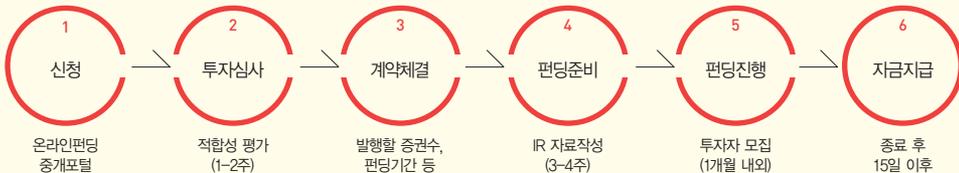
신청대상

- » 비상장 중소기업인인면서 ①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② 프로젝트성 사업(예 : 영화, 미술, 음악 등 제작 Project)을 수행하는 자
-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초과시에도 가능
- 일부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무도장 등 창업지원법 상 제외업종)은 불가

한도 모금액

- » 연간 7억원 이내

신청절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개 수수료

› 6~10%(모집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 중개포털별로 상이)

신청기관

›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016. 7월말 현재 13개사)가 운영하는 ‘온라인펀딩 중개포털’을 통해 접수 가능

<p>온라인펀딩 중개포털 ></p>	<p>funding4u invenst.funding4u.co.kr T. 02.2606.8846</p>	<p>ktb Investment & Securities crowd.ktb.co.kr T. 1588.3100</p>	<p>유진투자증권 crowd.eugenefn.com T. 1588.6300</p>
<p>DOABLER invest.doabler.com T. 031.698.2568</p>	<p>키움증권 crowd.kiwoom.com T. 1544.9000</p>	<p>KOREASSET WiCrowd www.wicrowd.co.kr T. 02.560.6300</p>	<p>OHMYCOMPANY www.ohmyfunding.com T. 070.4412.2556</p>
<p>WEALTH FUNDING www.wealthfunding.co.kr T. 02.569.4961</p>	<p>ucanstart. www.ucanstart.com T. 070.5097.1456</p>	<p>yinc www.yinc.kr T. 02.6275.1024</p>	<p>Wadiz www.wadiz.kr T. 070.5088.5031</p>
			<p>IBK투자증권 crowd.ibks.com T. 1544.0050</p>
			<p>OpenTrade otrade.co T. 02.2051.9979</p>

온라인펀딩모집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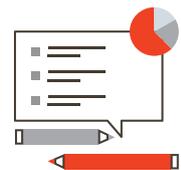
기업명	사업내용	모금액(원)
라이트앤슬림	보장성 몸매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체지방 조절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 제공	700,000,000
온오프믹스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를 연결하는 O2O 플랫폼	699,999,899
아이비케이에스문화콘텐츠투자	영화 "인천상륙작전" 제작	500,000,000
모헤닉게라지스	수제 자동차 제조	248,200,000
태주산업	누르면 빠지는 멀티탭(클릭탭) 제조 판매	199,042,500
타스글로벌	수중선박 표면청소, 인양 작업 등이 가능한 수중로봇 제작	149,850,000
쉐어잡	지인기반 채용정보 공유 서비스	100,000,000

출처 <http://www.crowdnet.or.kr>

KEYWORD | 재도전 지원정책 찾기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1	종합지원			
1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2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재창업 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용자	8
		개인 신용회복 절차	신용회복	28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30
		개인 회생 제도	개인회생,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33
		개인 파산·면책 제도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35
2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37
		법인기업 파산 제도	기업파산, 재산 매각배당	48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59
		기업회생 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60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62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금융지원,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대출전환	63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75
3	자금 및 보증			
3-1	자금지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7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자금지원	19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분야	자금지원	21
3-2	자금투자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6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68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재창업 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용자	8
3-3	자금용자	재창업 자금(용자상환형)	자금용자	10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4
		구조개선 전용자금	자금용자	66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11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12
3-4	보증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성실실업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지원	13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보증지원	14
3-5	연계지원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자금 및 보증,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55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4	교육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7
4	교육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교육	22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교육, 종합전문상담	24
5	컨설팅 및 비용지원			
5-1	종합전문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종합전문상담	24
5-2	컨설팅 및 멘토링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6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7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4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자금 및 보증,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55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컨설팅 및 비용지원	54
5-3	컨설팅 및 비용지원	기업 부실예방진단	컨설팅 및 비용지원	56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57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58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47
6	기타지원			
6-1	자산매매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증개장터	자산매매	51
6-2	신용정보 공유제한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75
6-3	세제지원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4
		재기중소기업인 조세 지원	세제지원	72
6-4	사무공간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6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7
6-5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 리스 지원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15
6-5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자금 조달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모집	80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발행일

2016. 8

발행처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T. 042.480.4434 F. 042.480.4308

기획·제작·인쇄

인투디자인 T. 042.636.391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